

# 국가대표훈련관리지침

제정 2014.12. 3.

전부개정 2021.12.29.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국가대표 훈련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기력향상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화훈련”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에서 선발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수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촌(이하 “선수촌”) 등에서 실시하는 합숙훈련을 말한다.
2. “강화훈련 지도자”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국가대표를 확정하기 전에 강화훈련 참가자로 선발된 지도자를 말한다.
3. “강화훈련 트레이너”는 강화훈련 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무, 체력, 기술, 심리, 영상분석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정원 외의 유사 임무를 수행하는 전담팀은 강화훈련 트레이너에 준한다.
4. “강화훈련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와, 국가대표를 확정하기 전에 강화훈련 참가자로 선발된 선수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21.12.29.]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협회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트레이너 포함), 선수와 훈련 관계자에 적용한다.

## 제2장 강화훈련 참가 신청 및 절차

**제4조(훈련참가신청)**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 선수는 협회가 선발·추천하고,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훈련에 참가한다. <개정 2021.12.29.>

- ② 국가대표 훈련 참가자들은 별지 제8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체육회 국가대표 관리시스템에 필요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③ 건강진단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강화훈련 참가 일을 기준하여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21.12.29.>
- ④ 국가대표 지도자 계약서에는 협회와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및 트레이너 간의 계약기간, 연봉, 업무 수행내용, 계약의 해지사유 및 기타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⑤ 협회에서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의한 선발결과, 회의록, 선발전(평가전 등) 결과 등의 관련서류를 체육회로 제출한다.(부상으로 교체시 진단서 첨부)
- ⑥ 삭제<2021.12.29.>

**제5조(참가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1.12.29.><항번호 삭제 2021.12.29.>

- 1. 전염성 질병을 보유한 자
- 2. 강화훈련 기간에 3회 이상 강제 퇴촌(소)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21.12.29.>
- 3.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원회에서 강화훈련 참가제한으로 결정되어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21.12.29.>
- 4. 협회 국가대표 운영규정에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12.29.>

- ② 삭제<2021.12.29.>
- ③ 삭제<2021.12.29.>

**제6조(훈련승인)** ① 제4조에 국가대표 훈련과 관련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일 5일 전까지 훈련계획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② 전항에 의한 훈련 요청시 일시, 방법, 인원 등을 명확히 한다.

**제7조(훈련절차)** 지도자, 선수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훈련은 협회가 승인한 날짜와 시간에 완료하여야 하며, 훈련시작과 함께 협회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 2. 훈련 시에는 훈련과 관련된 물품 이외에 불건전한 외설물은 일체 지참할 수 없다.
- 3. 지도자는 선수를 제외한 자체트레이너 등 훈련참가를 협회에 승인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삭제<2021.12.29.>

### 제3장 합숙훈련 기간 중 생활

제9조(생활시간) 합숙훈련의 일과는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일부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연 번	시 간	일 정
1	06:00~	기 상
2	06:15~07:00	조조훈련
3	07:00~08:00	조 식
4	08:30~12:00	오전훈련
5	12:00~13:00	중 식
6	14:00~15:00	오후훈련
7	18:00~19:00	석 식
8	20:00~22:00	교양교육 또는 자유학습
9	22:00~	취 침

※세부훈련은 주간훈련계획에 의거 시행

제10조(교육) ① 협회는 국가대표 훈련참가 지도자, 선수의 자질향상 및 투철한 국가관과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훈련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도자, 선수는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학생선수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등교, 위탁교육, 이동수업, 교실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합숙훈련에 60일 이상 참가하는 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반도핑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④ 합숙훈련 참가자는 스포츠인권교육을 받아야한다. <신설 2021.12.29.>

⑤ 합숙훈련 참가인원은 연 1회 이상 봉사활동(재능나눔, 지역사회 일손돕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11조(회의 및 간담회) ① 협회장은 필요한 경우 합숙훈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협회장은 합숙훈련하는 지도자 및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정례간담회를 통해 생활내규, 인권, 청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훈련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신설 2021.12.29.>

③ 협회장은 회의 및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반영 조치한다. <개정 2021.12.29.>

제12조(외출, 외박) ① 입촌훈련 참가자는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출·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선수들이 외출·외박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외출자는 당일 23:00까지 복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④ 협회는 특별한 경우 지도자 및 선수의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3조(면회)** ① 합숙훈련 참가자의 면회는 훈련시간 이외의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협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식사)** ① 식사는 지정된 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급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29.>

1. 당일 훈련에 참가중인 지도자, 선수
2. 국가대표 훈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협회는 지도자의 요청이 있거나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급식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도자는 식사 시간을 선수들에게 공지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협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지도자는 특식계획 등은 해당일 3일 전에 협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진료)** ① 협회는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 중인 지도자, 선수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1.12.29.>

1. 경미한 부상이나 질환일 경우 의료기관 또는 선수촌 의무실에서 치료한다.
2.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간에 치료를 의뢰한다.

② 지도자 및 선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협회 또는 체육회에서 가입하는 상해보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16조(시설·차량이용)** ① 선수촌 훈련시설 또는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체육회의 차량, 영상분석실, 각종 시설물 및 용기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에는 협회의 승인아래 체육회로 1일전에 소정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용수칙은 체육회가 정한 수칙을 따른다.

2. 기타 훈련시설이 필요한 경우 지도자는 사용 일주일 전 협회로 요청하여야 하며, 협회에서는 지도자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 후 협조를 요청한다.
3. 기타 훈련시설 이용시 해당 시설물 사용수칙에 따른다.
4. 시설물의 보완이나 신규 교육용 기자재 등이 필요한 경우 건의할 수 있다.
5. 지도자, 선수는 제반 시설물을 사용함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 훈련 각종 시설물은 지도자가 관리하며, 훈련 시 활용할 의무가 있다.

② 협회는 훈련시설물 및 교육용 기자재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사용물에 대한 훼손, 망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토록 할 수 있다.

**제17조(일반수칙)** ①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중인 지도자, 선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도자, 선수는 상호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 명량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2. 도박이나 불건전한 오락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29.>
3. 훈련 중 일체 음주를 금하며 선수는 흡연을 할 수 없다.
4. 훈련 중 정숙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훈련에 맞는 복장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 질서를 해치는 언행과 복장은 삼가야 한다. <개정 2021.12.29.>
6. 남·여 지도자 및 선수는 남자 또는 여자 숙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7. 지도자, 선수 및 훈련관계자 이외의 자는 숙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8. 지도자, 선수는 배정 받은 호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9. 침구와 비품은 기상과 동시에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10. 지도자, 선수는 물자 및 에너지를 절약하여야 한다. (절전, 절수 등)
11. 외부시설 이용은 사전에 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한다.
12. 입촌 훈련하여 훈련에 참가중인 지도자 및 선수는 체육회가 별도 제정한 선수촌 생활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 제1항에 대하여 지도자가 생활평가를 실시하여 상응한 상과 제재를 줄 수 있다.

③ 입촌 시 지도자는 선수의 기상여부를 확인하고, 당일 정원 대비 현재 인원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오전 9시 이전에 생활지도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18조(퇴촌)** ① 훈련에 참가중인 지도자, 선수가 전 조의 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회장이 즉시 훈련 퇴소를 명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도자에게 통보한다.

② 퇴(촌)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퇴소자는 지급받은 물품일체를 지도자에게 반납하고 퇴소하여야 한다.
2. 입촌시 퇴촌자는 숙소 내부의 침구 등 기물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퇴촌신고서를 생활지도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3. 훈련 기간중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시설과 비품에 대한 훼손 또는 망실품은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훈련일시중지)** ① 국가대표 훈련참가 지도자, 선수가 개인적으로 국내·외 대회 및 평가전 등에 참가할 경우 훈련은 일시 중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회 등에 참가하는 선수가 소수에 불과하여 잔류선수에 대해 국가대표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지도자가 잔류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지도자가 요청한 국가대표 훈련참가 지도자, 선수의 개인적인 대회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지도자)**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 자격은 협회 국가대표 운영규정 제5조, 제6조에 따른다. <항번호 삭제 2021.12.29.>

#### 제4장 강화훈련 운영

**제21조(훈련기간)** ① 훈련기간은 목표 대회를 대비한 협회 훈련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지도자는 협회의 기본 훈련계획에 의한 훈련기간 내에 훈련 실시가 곤란하거나 훈련실시 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2021.12.29.>

**제22조(훈련방법)** ① 강화훈련은 선수촌에서 행해지는 입촌훈련과 선수촌 밖에서 행

해지는 촌외훈련으로 구분하며, 강화훈련 기간 지도자는 선수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훈련방법은 입촌 및 촌외 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촌 및 촌외에서 훈련시 출퇴근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월간 훈련계획 수립 시 그 내용을 포함하여 체육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④ 지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촌 또는 촌외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여건 상 필요한 경우

2. 주요 국제대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국내 적응훈련이 필요한 경우

3. 전용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훈련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내 외부팀 또는 해외 현지팀과 합동훈련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1.12.29.>

⑤ 입촌훈련 시 국가상비군 또는 일반선수와의 합동훈련은 지도자의 요청 및 협회와 체육회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며, 합동훈련에 참가하는 국가상비군 또는 일반선수는 훈련장 이외의 편의시설(숙소, 선수식당 등)과 훈련시설(운동장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협회는 필요에 따라 합숙훈련 선수의 훈련 성과측정을 위하여 체력, 메디컬 체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제23조(임무)**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자의 임무는 국가대표 운영규정 제14조(지도자의 임무), 제15조(선수의 임무)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1. 삭제<2021.12.29.>

2. 삭제<2021.12.29.>

3. 삭제<2021.12.29.>

4. 삭제<2021.12.29.>

5. 삭제<2021.12.29.>

6. 삭제<2021.12.29.>

7. 삭제<2021.12.29.>

8. 삭제<2021.12.29.>

9. 삭제<2021.12.29.>

10. 삭제<2021.12.29.>

② 삭제<2021.12.29.>

**제24조(급식비 및 숙박비 지원)** ① 지도자는 협회의 승인을 득한 후 수립한 훈련계획에 따라 실제 급식인원 분의 급식비를 집행한다. <제목개정 2021.12.29.>

② 월별 또는 특별훈련 계획에 따라 지도자는 협회로부터 훈련개시일전에 카드 또는 현금을 수령하여야 하고, 추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훈련기간 중 개인적으로 국내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인턴발 기간으로 간주하여 급식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지도자는 국내에 경기 및 훈련 시설이 없거나 기후여건 및 선진 경기력 습득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국외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전지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촌외훈련 시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때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9.>

**제25조(수당지급)** ① 협회는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중인 지도자, 선수에게 체육회에 준하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선수수당의 지불기간 계산은 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공휴일, 주말휴가, 훈련계획에 의한 특별휴가, 협회의 승인을 받아 출전하는 국내·외 대회 참가기간 등은 훈련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복귀하여 각종 국내·외 대회, 국외전지훈련 및 선발전에 참가할 경우 그 참가기간은 훈련일수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③ 지도자 수당 및 선수수당은 지정일에 체육회로 지급 요청한다.

④ 지도자에 대한 수당은 체육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⑤ 선수에 대한 수당은 체육회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의2(특별훈련비)** 협회는 필요한 경우 개인종목의 국가대표 선수 중 우수선수를 선정하여 특별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12.29.]

**제25조의3(포상 및 격려금)** 협회는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중인 지도자, 선수의 사기진작 및 훈련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포상 및 격려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29., 개정 2021.12.29.>



제26조(징계) 삭제<2021.12.29.>

제27조(성과 평가) ① 협회는 강화훈련에 참가 중인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1회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지도자의 역량 강화에 힘쓴다.

② 강화훈련 중인 지도자에 대한 성과 평가 방법은 별도의 성과 지표 및 평가 기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12.29.]

제28조(국가대표훈련제외) ① 협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도자, 선수를 국가대표 훈련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지도자가 사유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외 요청을 할 경우

2. 강화훈련 참가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1.12.29.>

3. 부상으로 인하여 훈련장 외부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1.12.29.>

② 강화훈련 참가자를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협회가 대체선수를 선발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29.>

③ 협회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④ 제1항제2호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국가대표 운영규정」 및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을 위반한 자

2. 제17조의 합숙훈련 일반수칙을 위반 또는 타 선수 훈련에 지장을 초래한 자 <개정 2021.12.29.>

3. 삭제<2021.12.29.>

4. 신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집무(훈련)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는 자

5.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6. 강화훈련 지도자로서의 임무에 태만하거나 지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1.12.29.>

7. 3일 이상 훈련에 무단 불참한 자

8.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품행, 성격 등이 단체생활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10.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11.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을 허용 또는, 부추기는 자
12. 삭제<2021.12.29.>

**제29조(협의 훈련 지도감독) 삭제<2021.12.29.>**

**제30조(강화훈련 제외 심의위원회) ①** 협회장은 강화훈련 참가자가 제2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자의 강화훈련 제외 심사를 위해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 협회장은 강화훈련 제외가 의결된 때에는 해당자와 체육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29.]

## 제5장 촌외훈련

**제31조(훈련 신청 및 승인) ①** 지도자는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훈련 실시사유 및 기대효과
2. 훈련기간, 장소, 인원
3. 훈련 책임자
4. 소요액 및 재원
5. 기타

② 협회는 지도자로부터 전항에 훈련 실시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지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 협회는 전항에 의한 훈련을 승인 통보할 시 소정의 훈련비를 보조하며 훈련은 지도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제32조(훈련 지도 감독체계) ①** 훈련을 실시하는 지도자는 관리책임자로, 사무처 직원중 훈련 담당자와 협의하에 실시한다. <개정 2021.12.29.>

② 전항의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수 관리 <개정 2021.12.29.>
2. 훈련상황 파악, 보고
3. 훈련여건 확보(훈련장 및 숙박시설)

4. 급식 및 위생관리
5. 훈련질서, 품위유지
6. 훈련지 관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7. 보조금 관리

③ 제1항의 담당자는 관리책임자와 협의를 원칙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④ 협회는 춘의훈련 중인 지도자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훈련계획 이행여부 등을 확인·감독한다. <신설 2021.12.29.>

**제33조(훈련 실시 준수사항)** ① 합숙훈련 참가자의 생활수칙은 선수촌 안에서의 훈련에 준한다. <신설 2021.12.29.>

② 훈련 중인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훈련은 미리 작성한 계획 및 일과표에 따라 실시 <개정 2021.12.29.>
2. 일자별 훈련참가현황을 포함한 훈련일지 작성 및 체육회 보고 <개정 2021.12.29.>
3. 사건·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즉시 체육회 보고 <개정 2021.12.29.>
4. 훈련기간 선수의 외출·외박 관리 <개정 2021.12.29.>
5. 삭제<2021.00.00>
6. 안전수칙 교육 철저 <개정 2021.00.00>
7. 선수촌의 지침 및 지시사항 이행 <개정 2021.00.00>
8. 급식은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칼로리 유지 <개정 2021.00.00>
9.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개정 2021.00.00>

<중전 제1항 및 제2항, 제2항으로 통합 개정 2021.12.29.>

**제34조(훈련 결과보고)** ① 훈련을 실시한 지도자는 훈련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훈련기간, 장소, 인원, 책임자
2. 훈련방법, 전적(대회 출전의 경우)
3. 훈련 성과 및 문제점 <개정 2021.12.29.>
4. 일자별 훈련참가현황

② 협회는 지도자의 훈련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양식에 의한 국고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지도자가 훈련 실시결과 보고를 지연할 경우 협회는 지도자에게 국가대표 운영규정 제28조에 의거 징계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④ 촌외훈련비의 목적외 사용 및 훈련계획의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촌외훈련비를 교부받거나 집행하였을 경우 협회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지도자에게 국가대표 운영규정 제28조에 의거 징계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제6장 보 칙

**제35조(초상권 및 홍보활동)** ① 국가대표 선수는 홍보, 교육, 행사 활동 또는 대회, 경기 참가 시 촬영과 인터뷰 등 협회의 각종 지시 및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자신의 대표팀 초상을 이용하여 각종 이벤트, 방송 및 광고출연, 출판 등을 할 때에는 협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개인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시 본인 또는 타인의 경기력 및 부상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36조(세부지침)** 협회는 훈련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국가대표 훈련참가 지도자, 선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부 칙 <2014.12.3.>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12.29.>

(시행일) 이 지침은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서 약 서

[입촌훈련에 대한 서약]

<b>훈 련</b>	① 각종 교육(소양, 생애주기 등)과 조조훈련에 성실히 참가한다. ② 훈련용 기구를 숙소나 다른 장소로 반출하거나 이동시키지 않는다.
<b>선수촌생활</b>	① 촌내 음주도박을 하지 않으며, 건전한 오락 이외의 잡기를 하지 않는다. ②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입촌하여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선수는 흡연을 하지 않으며, 지도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한다. ④ 촌내에서 생활질서를 해치는 언행과 복장 착용을 하지 않는다. 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성의 숙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⑥ 숙소에서는 정숙해야 하며, 배정받은 호실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b>기 타</b>	① 금지약물을 소지하거나 복용, 타인에게 부추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부정청탁이나 뇌물을 수수하지 않으며, 부패행위를 보면 즉시 신고한다. ③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가대표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촌외훈련에 대한 서약]

<b>훈 련</b>	① 촌외훈련 참가자의 생활수칙은 국가대표선수촌 입촌훈련에 준한다. ② 훈련계획 및 일과표에 따라 성실하게 훈련에 임한다. ③ 지도자는 매일 아침 9시 이전 훈련인원 및 건강상태 이상유무를 대한체육회에 보고한다.
<b>촌외 생활</b>	① 숙소에서 음주도박을 하지 않으며, 건전한 오락 이외의 잡기를 하지 않는다. ②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성의 숙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③ 숙소에서는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b>기 타</b>	① 금지약물을 소지하거나 복용, 타인에게 부추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부정청탁이나 뇌물을 수수하지 않으며, 부패행위를 보면 즉시 신고한다. ③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가대표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국제대회 참가에 대한 서약]

<b>대회참가</b>	①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시 개회식 및 폐회식 등 공식행사에 공식유니폼 또는 단복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참가한다. ②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시 초상권, 사진, 이름,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때에는 대한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b>기 타</b>	① 금지약물을 소지하거나 복용, 타인에게 부추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부정청탁이나 뇌물을 수수하지 않으며, 부패행위를 보면 즉시 신고한다. ③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가대표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④ IOC현장, OCA현장, 대한체육회 정관, 대한체육회 마케팅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한다.

20 . . .

서약자 성명

(서명)

국가대표선수촌 선수촌장 귀 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체육인번호, 혈액형, 증명사진, 주소, 소속팀,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주택, 사무실), 전자우편, 학력사항, 경력사항, 체력, 근력, 메디컬 관련 자료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본인확인, 선수등록,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 각종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장학생 선정, 각종 지급금 송금 등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① 본인 확인, 선수 등록, 대회출전, 증명서발급에 이용 : 체육인번호, 성명, 증명사진, 경력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③ 교통비, 수당 등 지급금의 입금에 이용 : 계좌번호 ④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는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체육인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인확인, 선수등록, 국제대회 출전, 증명서 발급 등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신상정보, 장애정보, 수급자 정보, 계좌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인확인, 선수등록, 국제대회 출전, 증명서 발급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서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법 적 대 리 인			동 의 자			
이 름	(인)		이 름	(인)		
주민번호						
동의자와의 관계			20	년	월	일

**국가대표선수촌 선수촌장 귀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소속	개인정보관리책임관	개인정보 취급자	직위	이메일	연락처
대한골프협회	처장 오철규	신현숙	과장	kga@kgagolf.or.kr	031)955-2255

## 외출·외박신청서

- 종 목 :         골 프                                         (남·여)  
○ 성 명 :  
○ 사 유 :  
○ 행 선 지 :                                         (연락처 :                                         )  
○ 외출(박)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 복귀예정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 복 귀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분

상기와 같이 외출(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담당지도자                                         (인)

※ 본 증은 외출시 지도자 또는 웰컴센터에 제출하시고 복귀시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h1>외 부 급 식 신 청 서</h1>	
종 목	(                                  )
인 원	총 (     ) 명 / 지도자 (     ) 명, 선수 (     ) 명
단체외식희망일	20    년    월    일 조식/중식/석식 ※ 해당 식에 동그라미 표시
카드 반납일	20    년 (     ) 월 (     ) 일
소 요 예 산	1. 조식시 : 9,000 × (     ) 명 = (                  ) 원 2. 중식시 : 18,000 × (     ) 명 = (                  ) 원 3. 석식시 : 17,000 × (     ) 명 = (                  ) 원 ※ 해당식만 예산 산정
<b>*주의사항</b> 1. 외부급식 신청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지도자가 훈련기획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2. 외부급식 신청 시 당해 식사는 선수촌 식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결제카드는 지도자가 수령, 예산 금액 내에서 집행 후 카드 및 매출전표 등 영수증(지도자가 필히 서명)을 익일 훈련기획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소요예산 초과 시 초과금액은 카드 외 별도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4. 카드 수령은 외식 희망일 당일(조식 시, 전일 오후) 단체외식 신청 지도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5. 수령한 카드로 식사 용도 이외의 사용이 절대 불가합니다. <b>※ 상기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단체외식을 신청하며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span>신청자(지도자) :</span><span>  년    월    일</span></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flex-end;"><span>(인)</span></div>	



[별지 제5호] <신설 2021.12.29.>

진 료 의 려 서					
수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예약일시	년 월 일 시	병원		진료과	
수진자주소					
상병명			상병분류기호		
진료기간			진료구분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발행일:       년    월    일 의사성명:                   면허번호: 제        호 요양기호: 33321175 의료기관: 진천선수촌 주    소: 04557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 105 전화번호: 043)531-0072                   Fax: 043)531-0070					

- 주 : 1. 이 진료의뢰서는 1차 진료후 2차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1차 진료담당의사로부터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교부됩니다.
2. 의사의 발급일로부터 7일(공휴일제외)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3. 환자상태및 진료소견란에는 현증, 검사, 투약 등 주요진료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라며 여백 부족시에는 뒷면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 퇴촌신고서

20 . . . . .

선수숙소(화랑관)	등 호	종목:	성명: (인)
-----------	-----	-----	---------

NO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불량 상태 기재)
		양호	불량	
1	드라이기, 형광등, 콘센트 전원 OFF확인			
2	난방 및 에어컨 전원 OFF확인			
3	숙소 비품 상태			
4	화장실 청결 상태			
5	현관 정돈 상태			
6	발코니 정돈 상태			
7	쓰레기 분리수거			
8	기타			

**숙소 불량상태 이상 유무(이상있을 시 O 표시)**

현관문, 방문, 창문, 방충망, 벽지, 바닥(온돌마루, 장판)	불박이장, 책상, 욕실, 발코니 타일, 세면기 수전, 양변기, 샤워기, 거울, 비데, 전등 스위치, 콘센트
냉·난방 조절기, 방송 스피커, 현관 인터폰	발코니 도장, 환기팬 결로 및 곰팡이, 마감코킹 오염 발코니 슬래브, 벽체 균열, 누수

**손·망실(파손 및 분실) 항목**

품목	파손(분실)	비고

▶ 기재요령: 천천히, 꼼꼼히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점검결과의 양호, 불량에 (○) 해주시고 불량상태 및 손·망실 항목을 기재 바랍니다.

## 훈련 실시결과 및 정산 보고

1. **종목(세부종목)** : 골 프
2. **기 간** :
3. **훈련장소** : (숙박장소 : )
4. **훈련책임자** :
5. **인 원** : 총 명(임원 명, 남자선수 명, 여자선수 명)
6. **훈련내용**
  - 일일 훈련내용 및 일자별 훈련참가 현황
  - 훈련방법, 전적(대회출전의 경우)
  - 훈련 성과 및 문제점
  - 선수 개인별 평가, 전력분석(대회출전 또는 해외훈련의 경우)
7. **소요경비(정산내역서 : 별첨 작성)**

재 원 별	과 목	보 조 액	정 산 액	정산잔액	비 고
국고보조	급 식 비				
	숙 박 비				
	계				
자체부담	교 통 비등				
	계				
합	계				

##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자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비 고
지도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력서</li> <li>2.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확인서(자격증사본) &lt;개정 2021.12.29.&gt;</li> <li>3. 지도경력 증명서</li> <li>4. 지도자 계약서 사본</li> <li>5. 건강진단서</li> <li>6. 서약서(별지 제1호)</li> <li>7.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li> <li>8.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li> <li>9.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2호)</li> <li>10. 경기력향상위원회 자료</li> <li>11. 이사회 자료</li> <li>12. 지도자 선발공고 증빙 &lt;신설 2021.12.29.&gt;</li> </ol>	경기력향상위원회 및 이사회 자료(회의안건, 회의록, 회의 출석 서명지 등) <신설 2021.12.29.>
트레이너 <신설 2021.12.29.>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력서</li> <li>2.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li> <li>3. 해당분야 경력증명서</li> <li>4. 트레이너 계약서 사본</li> <li>5. 건강진단서</li> <li>6.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li> <li>7.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li> <li>8.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li> <li>9.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2호서식)</li> <li>10. 경기력향상위원회 자료</li> <li>11. 트레이너 선발공고 증빙</li> </ol>	경기력향상위원회 자료 (회의안건, 회의록, 회의출석 서명지 등) <신설 2021.12.29.>
외국인 (지도자 및 트레이너) <신설 2021.12.29.>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력서</li> <li>2.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li> <li>3. 지도경력 또는 해당분야 경력 증명서</li> <li>4. 지도자 계약서 사본</li> <li>5. 건강진단서</li> <li>6.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li> <li>7.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li> <li>8.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2호서식)</li> <li>9. 경기력향상위원회 자료</li> <li>10. 이사회 자료</li> </ol>	이사회 자료(지도자에 한함) <신설 2021.12.29.>
선 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상기록카드(전자시스템 양식)</li> <li>2. 건강진단서</li> <li>3.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li> <li>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2호서식)</li> <li>5. 경기력향상위원회 자료 &lt;개정 2021.12.29.&gt;</li> <li>6. 선수 선발공고 증빙 &lt;개정 2021.12.29.&gt;</li> </ol>	경기력향상위원회 자료 (회의안건, 회의록, 회의출석 서명지 등) <신설 2021.12.29.>